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 구

목 차

1	공 보 실	세입예산 징수방법 개선	1
2	자치행정과	성과측정방법의 개선으로 성과보고서 신뢰성 제고	2
3	교육체육과	철저한 사전검토 및 사업계획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 요망, 신뢰가능한 성과보고서 작성	4
4	재 무 과	공유재산(물품) 관리 철저	6
5	일자리경제과	사업시행가능성 사전검토 철저	8
6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재원활용 방안 검토	10
7	여성가족과	신중한 예산편성 요망	11
8	청소행정과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준수 철저 및 예산전용의 신중 요망,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	12
9	주 택 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집행 철저	14
10	건 축 과	신중한 과태료 부과 요망	16
11	교통행정과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	17
12	의 약 과	민간위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정산내역 확인 철저	18

공 보 실

I

시정요구사항 ▶ 세입예산 징수방법 개선

1

현 황

●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연도별 세입현황

(단위: 원)

과목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율
세외수입	2017	12,362,710	11,088,710	1,274,000	10%
	2016	19,194,770	18,088,890	1,015,880	5%
	2015	14,661,960	12,409,640	2,252,320	15%

- 세외수입 징수결정 후 출납폐쇄기한까지 매년 미수납액이 5%에서 15%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 2015년 4월호 중구광장에 게재된 유료광고 1건(176,000원)과 2017년 11월호 중구광장에 게재된 유료광고 1건(176,000원)은 결산 검사일 현재(2018년 3월)까지 체납상태임.

2

권고사항

- 중구광장을 통한 유료광고료는 업무 성격상 체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사안으로써,
- 광고료를 선납 징수하는 방안 등 체납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기 바람.

II

조 치 사 항

- 중구 소식지 발행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중구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광고를 심의한 직후 바로 광고게재 신청자에게 결정여부 통보와 고지서를 발송하여 광고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시 안내문 발송과 유선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납 관리

자치행정과

I

시정요구사항 성과측정방법 개선으로 성과보고서 신뢰성 제고

1

현황

🌐 정책사업 목표인 ‘구민이 주인되는 열린 참여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킨다’에 대한 성과측정방법이 변경

: 주민대상 설문조사 → 주요분야 전문가 컨설팅 평가로 변경

※ 성과지표 달성현황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구민이 주인되는 열린 참여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킨다	외부 전문가 컨설팅	외부 전문가 평가	목표	0	70
			실적	0	74.2
			달성률(%)	0%	106%

2

권고사항

🌐 당초의 성과 측정방법이 시간과 비용대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구민의 행정수요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정책사업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측정방법의 타당성 확보로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II

조치사항

● 정책사업 목표가 열린 참여행정구현 및 구민 행정수요충족인 만큼 성과측정 방법을 당초의 성과측정방법인 중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만족도 설문조사를 도입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 기획예산과 분야별 여론조사에 동일 평가항목이 있으므로 정책사업 지표로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외부전문가 컨설팅 평가 항목에도 분야별 항목을 추가하여 향후 열린 참여행정 성과 측정방법의 타당성 확보 및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추진일정 : 2018년도 성과측정방법 개선
(구민대상 여론조사 활용 및 외부전문가 컨설팅평가)
- 추진방법 : 여론조사 50%, 전문가 컨설팅 평가 50%

교육체육과

I

시정요구사항 ▶ 철저한 사전검토 및 사업계획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 요망

1

현 황

-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 사업을 2년 연속 같은 금액(50,65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제기 등으로 신규강좌를 개설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회계연도 연속하여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킴.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	2017	50,650	25,553	25,097	50%
	2016	50,650	32,431	18,219	36%

- 2016회계연도에는 야외체조(에어로빅) 강좌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운영장소 미비 등의 어려움으로 신규개설하지 못하였고,
- 2017회계연도에는 줌바댄스 혹은 필라테스 강좌를 신설하기로 예정하였으나 강사료 등이 협의되지 않아 신규개설하지 못하였음.

2

권고사항

- 신규강좌 개설 등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강사섭외, 운영장소 협의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예산편성 이후 사업계획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 발생이 확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액에 감액 등 예산재배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II

조치사항

- 생활체육교실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강사섭외, 운영 장소 협의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음. (배드민턴교실, 탁구교실 추진 중)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이 발생 할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 시 예산 감액을 적극 검토하겠음.

교육체육과

I

시정요구사항 ▶ 신뢰가능한 성과보고서 작성

1

현황

- 정책사업 목표인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중구 실현’의 성과지표로 ‘생활체육 여가교실 운영횟수’를 이용하여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실제 달성 성과와 성과보고서상 달성 성과 수치가 서로 상이하고, 실제로는 ‘미달성’이나 성과보고서상 성과 ‘달성’으로 보고하였음.
- 성과지표 달성현황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달성성과	실제 달성성과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중구실현	생활체육 여가교실 운영횟수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횟수 및 걷기대회 개최횟수 집계	2017	1,820회 (100%)	1,411회 (77%)
			2016	1,820회 (100%)	1,476회 (81%)

2

권고사항

-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사업 목표별로 수립한 정책목표가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초과달성·달성·미달성으로 구분하여 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 평가 및 피드백 역할으로써 의의가 있으나,
-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됨.
-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성과보고서 작성이 요구됨.

II

조치사항

- 이호조상에 달성성과 수치를 수정 조치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음.

재 무 과

I

시정요구사항 ▶ 공유재산(물품) 관리철저

1

현 황

연도별 물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가	감소		
2017	8,210	473	84	8,599	104% 증가
2016	7,259	1,029	78	8,250	113% 증가
2015	6,684	955	380	7,259	108% 증가

- 연도별 결산서상 구유재산(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불용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정 기			수 시			비 고
	횟수	건수	금액	횟수	건수	금액	
2017	1회	709	1,330	12회	12	84,381	
2016	1회	587	1,040	12회	426	154,495	
2015	1회	221	618	10회	308	135,601	

2

권고사항

- 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제정·운영중에 있는 바,
- 동 조례 제70조(불용품의 매각) 제8항에 의거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향후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 실시하는 등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II

조치사항

추진방법

- 불용품 정기 매각처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 부서 요청시 수시 매각처분 병행, 물품관리 효율성 증대

추진일정

- 2018. 3. 27. : 상반기 정기불용 매각처분 기 실시
- 2018. 9. ~ 10. : 하반기 정기불용 매각처분 추진

일자리경제과

I

시정요구사항 ▶ 사업시행가능성 사전검토 철저

1

현황

- 2017회계연도 취업지원과(現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마을기업육성’ 사업예산 12,500천원은 2017년 마을기업 미선정(서울시 심사탈락)사유로, ‘경로당,공동작업장 되다’ 사업예산 30,000천원은 경로당 내에 작업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없어 해당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음.

- 세부사업별 불용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비고
계		42,500	0	42,500	100%	
취업지원과	마을기업육성(보조)	12,500	-	12,500	100	現 일자리경제과
취업지원과	경로당,공동작업장 되다	30,000	-	30,000	100	現 일자리경제과

2

권고사항

- 사업의 시기, 사업의 시행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수요조사 및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진행 중 사업계획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 발생이 확정될 경우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여야 함.
-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II

조치사항

-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최소한 1개 업체의 선정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향후 해당연도 마을기업 미선정시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겠음
- ‘경로당 공동작업장 되다’ 사업은 타구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작업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없어 불용되었음. 추후 사업예산 편성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토록 하겠음

사회복지과

I

시정요구사항 특별회계 재원활용 방안 검토

1

현 황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 고
용자건수	7건	6건	3건	2건	
예산현액	1,463,570	1,590,353	1,684,323	1,805,166	
집 행 액	80,000	103,000	23,300	24,400	
집행잔액	1,383,570	1,487,353	1,661,023	1,780,766	

2

권고사항

- 중구 홈페이지 팝업창, 동 게시판 및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기금 대비 운영실적이 미미함.
- 따라서 2017.5.4. 개정된 특별회계 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최근 특별회계 운용실적을 분석하여 일부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이 검토 요구됨.

II

조 치 사 항

- 2016.10.4.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2호)에 의거 조례 개정을 통해 전출규정을 만들 수 있으나, “구 재정여건상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함.
- 예산부서 협의 결과 “구 재정여건상 현저히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회계 일부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상황 발생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여성가족과

I

시정요구사항 신중한 예산편성 요망

1

현 황

- 장애아시설 환경개선(보조) 사업예산은 ‘어린이집 환경개선(보조)’사업에 편성 되어야 할 예산이 이중편성 되어 예산대비 100%의 불용률이 발생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비 고
계		46,000	0	46,000	100%	
여성가족과	장애아시설 환경개선(보조)	46,000	-	46,000	100	

2

권고사항

- 예산이 이중편성 되었기에 예산편성과정부터 신중성이 요구됨
- 예산 이중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이 확실시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에 재편성하여야 할 것임

II

조 치 사 항

- 예산 편성 전 서울시 사업부서 사전확인 절차 거쳐 보조사업예산 착오편성 사전 방지
- 보조사업 예산 변경사항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 예산 불용률 최소화

청소행정과

I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철저 및 예산전용의 신중 요망

1

현 황

-  2016년 6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4조에 의거 폐기물의 수수료 등의 수입주체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에서 중구청으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기 징수한 사업장 종량제봉투 반입 수수료 및 종량제봉투제작비를 2016회계연도 중에 대행업체에 환급하여야 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2017회계연도 예산을 전용하여 환급하였음.

(단위 : 천원)

과 목			전용금액		비 고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민간위탁금	322,784		
	폐기물안정적 처리	과오납금		322,784	

2

권고사항

-  회계연도 중 과오납금, 환급금 등의 채무가 확정된 경우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세입·세출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심의 기능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II

조치사항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출하겠음
-  예산의 편성목적 및 심의기능에 맞게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것임

청소행정과

I

시정요구사항 ▶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

1

현 황

정책사업 목표인 ‘청소행정 강화 및 재활용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의 성과달성도 측정방식을 청소 참여단체 및 참여인원으로 하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식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달성성과(%)	실제 달성성과(%)
주민 자율청소 참여실적 (누적인원)	청소참여단체 및 참여인원	2017	4,500명(100%)	측정자료미비
		2016	4,400명(100%)	측정자료미비

성과보고서상 자율청소 참여인원은 성과목표와 일치하여 100% 성과달성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청소 참여인원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측정이 어려웠음에도 100%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함

2

권고사항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됨

성과의 측정방식의 개선으로 정확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요구됨

II

조치사항

우리 구 15개 동의 주민자율청소 참여 계획과 성과 자료치를 정확히 수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참여인원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주 택 과

I 시정요구사항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집행 철저

1 현 황

-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총예산 150,000천원으로 진행되었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50 ~ 70%의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 동조례 제10조 제4항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중구 평화아파트(퇴계로8길 23)의 경우 옥상방수공사 총사업비 24,755천원 중 16,338천원의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20%를 증액한 19,606천원으로 지원금이 심사의결되었음.

- 평화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단위 : 천원)

심의내역			의결사항		비 고
사업명	총사업비	지원금	의결	지원금액	
옥상방수공사	24,755	16,338	증액지원	19,606	- 지원금액의 20% 증액

● 2017년 제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신당현대@, 중림삼성@)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신청금액	위원회 심사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 고 (집행률)
계	54,521	32,242	32,106	26,599	5,507	
신당현대@	14,594	10,215	9,114	5,924	3,190	65%
중림삼성@	39,927	22,027	22,992	20,675	2,317	90%

-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는 동 사업의 특성상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없으나, 신당현대@의 경우 3,190천원이, 중림삼성@의 경우 2,317천원이 미집행 반환되어 익년도 잡수입 처리되었음.

2

권고사항

-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인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동주택에서 사업신청을 할 경우 사업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 미집행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공동주택에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II

조치사항

- 2018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지원기준, 사업필요성, 단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2018.4.27.심의위원회 개최 및 각 단지 통보 완료)
- 2018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한 단지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우리부서 및 관련 협조부서에서 현장조사 하고, 사업 시급성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하여 상정하는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공동주택에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건 축 과

I

시정요구사항 ▶ 신중한 과태료 부과 요망

1

현 황

- 2015년도에 기부과납부된 신당동 165-00번지와 필동2가 61-0번지의 건축 범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2017년도 감사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기 납부된 과태료에 대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였음
- 과태료 환급 결의를 통해 본세 8,515,560원과 이자 403,890원을 반환하였음

2

권고사항

- 과태료 부과시 신중을 기하였다면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자 지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향후 과태료 부과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환급액 및 환급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II

조 치 사 항

-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감사 시에 양성화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득한 것이 적발되어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직권취소한 사항으로, 양성화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직권취소 처분에 따라 환급하였음
- 추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 신중을 기하여 양성화 처리하여 취소 등으로 인한 과태료 환급액 및 환급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교통행정과

I

시정요구사항 ▶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

1

현황



성과지표 달성현황

- 정책사업 목표 :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성과지표	측정방식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 목표(건)	성과보고서상 목표(건)
교통질서확립 계도 및 단속실적(건)	법규위반 등 계도 및 단속실적	2017	450	800
		2016	450	1,000



교통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통해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 실적을 통하여 성과측정을 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상 목표치와 성과보고서상 목표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임의로 성과목표를 변경하였음.

2

권고사항



성과계획서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목표대비 달성률을 통하여 달성, 미달성 및 초과달성으로 구분하여 성과 달성률을 측정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상 목표와 성과보고서상 목표가 임의로 변경이 되어 성과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결여됨. 목표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명확히 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목표를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II

조치사항



성과계획서상 목표와 성과보고서상 목표가 일치하도록 수정조치 완료 : 2018.04.30.

성과지표	측정방식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 목표(건)	성과보고서상 목표(건)
교통질서확립 계도 및 단속실적(건)	법규위반 등 계도 및 단속실적	2017	450	450
		2016	450	450



향후 과년도 달성률과 당해 연도 계획을 종합하여 성과계획서 목표 수립

의 약 과

I

시정요구사항 ▶ 민간위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정산내역 확인 철저

1

현 황

정신보건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정신보건사업	693,602	693,602	-	-	

-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現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금 정산 보고시 매월 사업비 정산서와 통장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예산항목별 세부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2

권고사항

- 부서에서는 민간위탁금을 교부한 경우 당초 교부한 목적에 따라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항목별 세부 집행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위탁업체 에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함.
- 또한, 위탁업체의 예산집행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교부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탁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II

조 치 사 항

- 추진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산보고 시정조치 사항
 - 월별 정산서 예산항목·사업별 및 재원 구분하여 작성 제출 요구
 - 월별 정산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회계서류 사본 제출 요구 (증빙확인에 필요한 자료)
 - 추진경과
 - 18년 3월 정산보고 재작성 제출,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 확인·검토함
 - '16~'17년도 회계서류는 재검토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